

임용결격 사유

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8. 병역법에 저촉된 자
9.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처분된 공직자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